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

2025. 2. 18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2. 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2. 4.

다. 상정일자: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5. 2. 1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출설명의 요지

□ 제출설명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맑은환경과)

가. 제출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에 배분되는 금액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해당 세입과 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2)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3) 잉여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4) 일반회계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- 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3) 기타
 - 가) 입법예고 : 2024. 12. 26 ~ 2025. 1. 15. (의견 없음)
 - 나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원안 동의
 - 다)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라)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3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24.2.20.)에 따라 화력발전¹⁾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교부¹⁾가 이루어져 지역부존자원의 보호·보전 및 주민생활·환경개선 등 목적에 맞는 세입운용을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,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안 제4조), 잉여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 등으로 본칙 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1조~안 제2조 목적 및 정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금액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근거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
1) 화력발전¹⁾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 자치구 : 마포구, 노원구, 양천구, 송파구

-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을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이자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 특별회계 세출은 신·재생에너지 사업, 에너지사업과 관련 홍보·교육사업, 특별회계 관리·운용 필요 경비, 구에 지원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24.2.20.)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가 배분되어 목적세의 부합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그동안 발전소 소재 시·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였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의 재정 보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음.
- 지역자원시설세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2호2)에 따른 목적세로서,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부합되는 사항이며, ‘별도 신설된 특별회계를 통해 운용하라’는 행정안전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운용 정비방안 지침(’20.2.25.)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아울러,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부존자

2)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세목)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광역시의 군(郡)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.

2. 목적세

가. 지역자원시설세

나. 지방교육세

원 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다만, 세출사업에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³⁾에 부합하는 지역부존 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과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출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3)「지방세법」

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부과한다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·군에 균등 배분한다. <신설 2024. 2. 20.>

1.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